

보험상담

문 : 1. 당 공단은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제16조 에 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허가받아 동법 제17 조에 따라 轉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공단은 동 국 유재산분임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하여 보험에 일괄 부보하고 그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당 공단과 사용자와의 사이에 보험부보에 대한 책임한계에 분쟁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2. 질의 사항

가.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의 책임한계 : 사용자가 당 공단 건물 일부를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일부 부담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용인이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재보험 사고를 발생케함으로써 부보한 재산에 손해를 가하여 당 공단에서 귀협회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및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고의, 과실, 중과실 별)

나. 보험대위 문제

(1) 사용자가 당 공단이 일괄부보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당해 보험에 대하여 당 공단이 갖게되는 보험당사자(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그 가능 여부.

(2)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 공단이 보험에 부보한 재산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케하여 귀 협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당 공단이 국유재산 승인조건에 의거 사용자에게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귀협회에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용인이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고의, 과실, 중과실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인 국가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동 약관 제4조 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하기 위하여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보험청구권은 귀 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자인 국가가 행사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구상권 관계는 질의 “나”의 (2)참조)

나. 질의 “나”의 (1)에 대하여

귀 공단(보험계약자)이 일괄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자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징수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귀 공단과 사용자사이의 업무관계로 보험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질의 “나”의 (2)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의,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를 취득하게 되는 바, 질의한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에서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귀 공단(보험계약자)도 사용자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보험료 부담분)를 할 수 없는 이상,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고의, 중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귀 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위권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국제공항관리공단 · 답변 : 본협회 기획조정실〉

화재는 한순간 후회는 한평생

방재상담

☐ : 자동화재탐지시설비의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할 때 공기관 상호 거리를 6~9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해야 합니다.

〈질의자 : 한도기업 설계연구소 · 응답자 : 방재연구부〉

☐ : 피난구 유도등의 이용이 불필요할 때, 예를 들어 실내에 사람이 없을 경우 등에는 소등해 둘 수 있는지요?

답 : 내부부에서는 '유도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단상3선식의 배선 방법으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점멸스위치를 항상 감시자가 있는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소등해 둘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자 : 삼성본관 방화관리자 · 응답자 : 방재연구부〉

☐ : 소화기에 있어서 A, B, C급 구분과 적응성, 소화원리 및 능력단위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 화재는 가연성 물체의 성상에 따라 A급, B급, C급 화재로 분류하는데 A급 화재란 물질이 다고난 뒤에 재를 남기는 화재, 즉 섬유, 종이, 목재 등의 일반화재를 말하며, B급 화재란 알콜, 석유 등의 가연성액체 및 프로판가스와 같은 가연성 화재를, C급 화재란 전기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에 있어서도 적응성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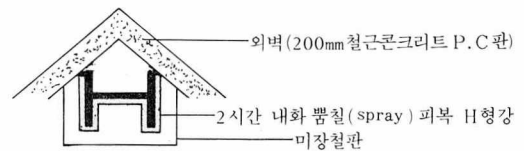
소화원리는 화면에 소화약제를 살포했을 때 열을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하는 냉각소화, 산소 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소화하는 질식소화, 연소반응 억제작

용에 의한 소화, 그리고 가연성물질을 제거시켜서 소화하는 제거소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소화기구별 적응성 및 능력단위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소방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 동양제지공업(주) 방화관리자 · 응답자 : 방재연구부〉

☐ : 건축물의 H형강 기둥에 그림과 같이 내화조치를 했을 경우 건축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보험목적물로서의 건물 구조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내화성능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제26조 제8호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528호(내화구조의 지정방법)에는 기둥, 보의 경우 최상층으로부터 5층까지는 1시간 내화, 최상층에서 세어서 층수가 6이상이고 14이내의 층은 2시간 내화, 최상층으로부터 15층 이상의 층은 3시간 내화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부제도 내화성능만 인정되면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요율서상의 건물 구조급수 판정 기준 중 기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조, 組積造, 그밖의 내화물질로 피복한 鐵柱의 경우가 1급 구조에 해당되는데 이는 설계 내용보다 시공내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협회 부설 방재시험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 멀리 않아 기둥에 대한 내화성능시험도 가능하므로 보험요율서상의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급수가 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자 : (주) 우일건축사무소 · 응답자 : 방재연구부〉